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 결

사건 2023고단478 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민경찬(기소), 최윤미(공판)

판결선고 2023.6.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7. 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임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 및 관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1. 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반납하면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임의로 탈착한 후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번호판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15:15경 위와 같이 횡령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다

른 무등록 이륜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15:15경 남양주시 C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가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이드미러를 제거하고, 조향장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튜닝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8. 23. 15:15경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현장적발 사진, 수배차량 상세조회, 압수목록, 계약서, 피의자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압수물 이륜차량 번호판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20호, 제34조(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치봉